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1. 16. 이해민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5. 1. 1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3.5)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6.2.24)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6.2.25)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해민의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 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상 수급인에 대한 대가 지급의 규정을 두고 있고, 민간 공사의 경우에도 건설공사 및 소방공사에는 발주자가 공사대금

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민간이 발주하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해 수급인의 계약이행 보증이나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 보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계약당사자간 민사 소송 등 불필요한 분쟁이 잦은 실정임.

이에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 비용 등을 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하여 정보통신공사의 공정한 계약이행과 발주자, 수급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6조의 2 및 제78조제1항제4호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자인 공사계약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공사대금의 지급이 보증되나, 민간 공사계약에서는 발주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급인으로서의 시간과 비용이 크게 소요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어 왔음.

개정안은 정보통신공사에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고 공사대금 관련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다만 안 제78조 제1항 제4호의2는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발주자뿐만 아니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지 않은 수급인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안 제26조의2 제1항은 수급인이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에 발주자가 이에 상응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고 있을 뿐, 수급인의 계약이행 보증 자체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또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해당 수급인과 계약을 하지 않거나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으므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지 않은 수급인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 현)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